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 건설기술인 등급체계 개편·안전관련 규제 강화, 5월 23일부터 시행 -

건설기술진흥법령이 지난 5월 2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해 5월 22일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후 그동안 추진해왔던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편집자 주]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기술자 체계의 전면적 개편 내용을 구체화 하고 건설공사 및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규제 강화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동안 기존의 자격 중심 기술자 등급체계가 학·경력 등의 요소를 과소평가하여 건설기술자의 종합적인 기술력 평가에 미흡하고, 기술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 시 반영되어 앞으로는 경력·자격 및 학력 등을 종합하여 점수화한 역량지수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등급(초·중·고·특급)이 산정된다. 다만, 역량지수에 따른 등급 산정 결과 기존보다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기술자 등급을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업무를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이수하도록 한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은 실무 투입 전 교육으로 실효성을 높이고 실무배치 후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받는 것으로 개선하되, 교육부담 완화를 위하여 교육시간은 3주에서 2주로 단축했다.

이와 함께 인명피해 발생 등의 경우에 설계업자·건설사업관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강화하고, 안전관련 의무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 민자사업자, 발전사업자 등 민간성격의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지 않았으나,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발주청이 시설물특별관리기준법 상 1,2종 시설물 공사의 안전관리계획(건설업자가 착공 전에 작성)을 심사하는 경우, 시설안전 전문 공기업인 시설안전공단에 의무적으로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여 심사를 내실화 했다.

1년 이상 공사중단 후 공사재개 전 의무적 안전점검 실시 대상이 현재는 시특별상 1·2종시설물 공사로 한정되어 있으나, 일반시설물 공사도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건설기술진흥법령의 시행은 기존의 칸막이식 업역체계 및 관리 위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국제 기준에 보다 근접한 융합·통합형 업역 및 기술자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건설엔지니어링 선진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기술진흥법령 시행 후속 조치로 국토부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을 지난 5월 23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기간 후 수립된 의견을 취합하여 최종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고시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및 등급(안 제4조 및 별표1)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 유사 건설ENG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 인력을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감리원으로 나누고 인정범위 및 등급체계도 각각 규정	○ 법률 개정에 따라 건설기술 인력의 인정 범위(자격) 통합 및 건설기술자 체계로 단일화하고, 경력·자격·학력 등을 종합한 역량지수에 따라 기술자 등급을 산정·부여하도록 개선

□ 개정 이유 및 내용

건설기술자 인정범위

건설기술자(시공·설계등 업무 수행)·품질관리자·감리원 등 건설기술 인력을 건설기술자로 통합한 법률 개정에 맞춰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자격)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관련 자격취득자,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등으로 통합함

* 업무실태·자격체계에 맞게 직무분야 15개→10개, 전문분야 54개→46개로 개선

등급체계

현행 자격중심 기술자 등급체계는 경력·학력 등 요소를 과소평가하여 건설기술자의 종합기술력 평가에 미흡하고 장기적으로 기술인력 수급 불균형을 초래

* 현행 등급체계에서는 학력·경력 기반 건설기술자의 승급이 제한(박사취득 후 20년 경력을 쌓아도 초급) → 최상·최하위 기술자는 많고(70% 이상), 업계의 수요가 많은 중간층 기술자는 빈약한 구조를 초래함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경력·자격·학력·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역량지수를 활용하여, 건설기술자 등급을 산정하도록 개선함

*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 경력(40점)·자격(40점)·학력(20점)·교육(가점 3점)으로 산정. 세부 기준은 입법예고(5월 23일) 기간을 거쳐 의견 수렴 후 본격 고시될 예정

<건설기술 인력 등급 체계 개선안>

현행			개정안	
구분	등급	승급	구분	등급·승급
건설기술자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각기 다른 승급 체계	⇒ 건설 기술자	역량지수 (경력+자격+학력+교육)에 따른 등급부여 및 승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감리원	수석감리사, 감리사, 감리사보, 검측감리			
품질관리자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제42조 및 별표3)

□ **주요 개정사항**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감리원 별로 교육·훈련 체계를 달리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는 각각 업무개시 후 3년 내에 3주·4주의 최초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술 인력 교육·훈련 체계를 통합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자는 업무개시 전에 2주의 최초교육을 이수하도록 완화

□ 개정 이유 및 내용

교육훈련 체계

건설기술 인력별로 각각 달리 규정된 교육훈련 기준을 건설기술자 단일체제로 전환(제42조)

교육훈련 시기·시간

최초 교육 취지(실무적응·이해도 향상)를 살리고 실무 배치 후 교육참석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로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최초교육을 받도록 하되, 건설기술자의 교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주(건설기술자)·4주(품질관리자)의 교육시간을 2주로 단축함

3.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안 제98조 및 제100조)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건설업자는 착공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의 심사를 받고 있으나, 형식적 절차에 그침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심사 전 시설안전공단에 검토의뢰를 의무화
○시특법상 1·2종 시설물은 공사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경우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의무화	○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 공사, 10층 이상 건축물 등도 장기간 방치 후 공사 재개시 안전점검을 의무화

□ 개정 이유 및 내용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건설업자는 착공전 안전관리계획 작성 이후 감리원 확인 및 발주청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발주청의 전문성에 부족으로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고 있음

* 안전관리계획서의 84%가 적정(보완불필요)으로 심사되고 있음. 이에 반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는 90%가 보완필요로 심사

심사 내실화를 위해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심사에 대해서는 시설안전공단에 검토의뢰를 의무화(제98조제4항)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종 시설물) 특수교, 경간장 50m 이상 교량, 연장 100m 이상 교량, 고속·도시철도 교량·터널, 국도터널, 500m 이상 지방도터널, 100m 이상 지하차도, 1백만톤 이상 댐, 16층·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

방치현장의 안전점검

1년 이상 공사중단·방치현장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상은 시특법상 1·2종시설물로 한정함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외 안전사고 위험이 큰 일반시설물*도 공사 재개 전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화(제100조제1항제4호)

*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 공사, 10층이상 건축물,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공사, 발주자가 점검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사 등

4.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 개선(제86조)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500억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만 사후평가 실시	공공사업 환류체계 강화를 위해 사후평가 대상을 300억 이상 건설공사로 확대하되 300~500억 건설공사는 간이평가를 하게 함

* 건설공사 사후평가 : 공공사업 효율화 및 예산절감을 위해 완공후 3~5년 내 발주청이 사업 전반의 성과(공사비·설계변경·안전사고), 효율(수요예측·이용실적 비교), 파급효과 등을 분석

* 타당성조사(수요분석 등 포함) 대상이 500억 이상 공사인 점을 고려, 사후평가 항목 중 실제수요·공사효과 비교 분석 및 주민호응·사용자 만족도는 제외하고 평가

